연세대학교 학생건강공제회 정관

개정일: 2022.11.18
제정일: 1999.03.01

담당부서: 학생건강공제회(02-2123-3350, 033-760-5430)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연세학생건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라 부른다.

제2조 (위치)
본 공제회는 연세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공제회는 연세대학교 학생을 위한 건강보험에 관한 사업을 관장함으로써 연세대학교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4조 (사업)
본 공제회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공제급여 : 공제급여는 각 목의 내용으로 한다.
   가. 요양급여
   나. 장제급여
2. 기타 공제회 목적과 관련된 사업

제5조 (학생의 정의)
학생이라 함은 신촌, 미래, 국제캠퍼스의 각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생 중 해당 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재학생을 말한다.

제2장 공제회원

제6조 (자격취득)
공제회원의 자격은 연세대학교 학생으로서 해당 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재학생을 의미하며,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공제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취득한다.

제7조 (추가가입)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자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이사회 심의 및 결의를 거쳐 공제회원이 될

수있으며, 등록금납부 시 선택납부하거나 공제회에서 공고한 추가가입 기간 내에 가입해야 한다.
1. 연세대학교 국제처 및 국제교육원의 해외파견 프로그램 참가자(Only Outgoing)
2. 채플만 수강하는 학부 초과학기자
3. 등록금납부기간 중 건강공제회비 미선택 재학생
4. 대학원 연구학기 등록생
5. 중국 태산의학원 방사선학과 학생

제8조 (자격상실)
공제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졸업, 제적, 수료 등으로 학생의 신분을 상실하거나 제7조의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정한 기일 내에 공제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본 공제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체면을 현저히 손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5. 공제회가 해산된 때

제3장 조직

제9조 (구성)
① 본 공제회에 이사를 둔다.
② 이사의 수는 8인으로 하되, 학부생은 신촌캠퍼스 소속 3인, 미래캠퍼스 소속 2인, 대학원생은 신촌캠퍼스 소속 2인, 미래캠퍼스 소속 1인으로 한다.

제10조 (임기)
① 이사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으로 한다.
② 전항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1월 15일까지 신임 이사진이 위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임 이사진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다만, 신임 이사진의 과반이 충족될 시 그 직을 상실한다.
③ 학생직영 운영체계 유지를 위한 기존 이사회 운영은 존속하되 이사장과 법인 대표자를 구분한다.
⑤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대표자는 최소 3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한다. 다만 제13조(직위해제)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그 즉시 직을 상실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의 경우에 한하여 법인 운영의 특성상 후임자 선출시까지 그 직을 유지하며, 신임 이사진의 이사장 선출일로부터 전권을 일임한다.
⑦ 이사장, 상임이사, 부이사장 및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회 의결로 해임된 이사장, 상임이사, 부이사장 및 이사는 연임할 수 없고 이후 이사진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11조 (위촉방법)
① 신촌학부, 신촌대학원, 미래학부, 미래대학원 각 단위의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중 1

인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② 총학생회 부재시 신촌학부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신촌대학원의 경우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연직 이사가 되며, 나머지 이사의 공석은 해당 단위에서 재위촉이 가능하다.
③ 각 단위의 당연직 이사 4인 이외의 이사는 '전문이사'에 해당하며, 전문이사는 전문성을 함양한 이사로 각 단위(신촌 학부 2인, 신촌 대학원 1인, 원주 학부 및 대학원 1인)의 중앙운영위원회 동의를 통해 해당 단위 이사가 추천 및 위촉한다.
④ 전문이사 4인의 경우, 의과대학(원), 치과대학(원), 간호대학(원), 보건대학(원) 등 건강보험에 직간접적인 지식을 함양한 자 이외에 경영 및 세무, 회계, 광고·홍보, 디자인 등 공제회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우선 선출한다(해당자가 없을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를 인정한다).
⑤ 이사회는 합의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 중 상임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

제12조 (고문, 연구 및 자문위원)

① 공제회는 필요에 따라 고문, 연구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이를 상시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과 연구위원은 위촉일로부터 그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이사회 승인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고문, 연구 및 자문위원은 각 3인 이하로 한다.
1. 고문: 본교 동문 혹은 저명인사에 해당하며, 경영 전반에 방향을 조언할 수 있는 경험 혹은 후원 의지가 있는 자에 해당
2. 연구위원: 운영 전반에 필요한 전임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추가필요시 제 11조 4항에 해당하는 전임 이사를 위촉
3. 자문위원: 본회와 관련된 분야의 교수 및 대학원생
④ 고문의 경우, 이사장 임명장을 수여하며 고문의 후원금 발생 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본교 재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을 우선으로 한다.
⑤ 연구위원의 경우, 운영 전반의 상시 자문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대중 교통비 기준의 경비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⑥ 자문위원의 경우, 공제급여 지급 혹은 본회의 운영 및 기능 확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할 시 소정의 자문료(본교 관계자에 한하며 건 당 석사급 3만원, 박사급 5만원, 교수급 10만원)를 지급하여 연구 및 수행에 도움을 준다.

제13조 (직위해제)

이사회는 이사(제11조 제1항의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이사의 직위해제를 의결할 수 있다. 해임이 의결된 이사는 의결 직후 그 직을 상실하나 이사직은 유지한다. 이사회는 직위해제 된 이사의 소속 중앙운영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해태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제회에 손실을 끼친 경우
4.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4조 (사임)

① 이사가 일신의 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제11조 제5항의 방법으로 공석이 된 이사를 재위촉 한다.

제15조 (법인 대표자)

① 법인 대표자는 서대문세무서 사업자등록증명원("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등록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세무적인 책임이 부여된다. 비영리법인 대표자로서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법인 대표자는 이사회의 승인하에 자격이 부여되며, 이사회의 안건을 제안하고 회의를 통한 이사회 결정에 대해 최종 승인 및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③ 법인 대표자는 교내외 법률적 사안에 대한 검토 및 결정을 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또한 전체 캠퍼스(신촌, 미래, 국제)의 세무회계 및 행정 업무 전반의 관리·감독을 하며 정기적인 결재업무를 수행한다.

④ 법인 특성상 대표자는 법적, 경제적, 행정적 책임에 대해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장기적인 운영을 이끌 수 있는 재학생 이외에 법률 해석 및 세무회계, 행정 업무에 능하고 비상근직이 가능한 전문가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제16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본 공제회를 대표하며 이사회를 통할하며 본 정관 등에 규정한 권한을 행사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촌 학부 학생대표, 신촌 대학원 학생대표, 미래캠퍼스 학부 학생대표, 미래캠퍼스 대학원 학생대표 순으로 해당학기 그 직을 대행한다.

제17조 (상임이사)

① 상임이사는 경우에 따라 1인을 선출할 수 있으며, 이는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이사장이 공제회의 통상적인 지출에 관하여 직접결재를 원칙으로 하되, 부재일 경우에만 소급적으로 이사장 이하 이사회의 승인을 통하여 결재를 위임한다.

③ 상임이사가 3회 이상 이사회 불참하는 등 이사회 운영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궐위의 경우에는 신촌 부이사장, 원주 부이사장, 이사의 순서로 그 직을 승계하며 승계자가 없을 경우 이사장이 이사회 외부 재학생 중에서 직접 선출한다.

제18조 공지

이사회 및 고문, 연구 및 자문위원 명단을 전 직원 및 조직 구성원에게 공지하며 변경 내용 또한 동일하게 공지한다.

제4장 이사회

제19조 (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결의한다.

1.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징계 및 임면에 관한 사항
6.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7. 공제회비 징수와 공제급여에 관한 사항

8. 공제회 운영을 위한 각종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10. 주요이사진 및 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11. 기타 공제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 (회의 소집)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1. 제18조의 의결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이 있을 때

제21조 (소집통보)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회 3일전까지 소집통고서와 의안을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안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제18조 제4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통해 서면 의결할 수 있으며,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23조 (회의록)

① 이사회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개회 일시 및 장소
2. 재적이사수와 참석인원수
3. 회의내용
4. 의결사항
5. 주요이사진의 서명 또는 날인
② 전항의 회의록 중 주요한 사항은 학기말에 각 단위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감사)

① 공제회는 외부감사를 두어야 하며, 외부감사 만으로 감사가 부족하거나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내부감사도 둘 수 있다.
② 내부감사는 주요이사진이 위촉하는 2인으로 한다.
③ 외부감사는 이사회에서 위촉한 국가공인 회계법인으로 한다.

제25조 (감사권)

① 이사회는 공제회의 사무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고 의결사항의 집행과 회계의 감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는 공제회의 직원을 출석시켜 사업에 관한 보고를 들을 수 있다.

② 삭제
③ 외부 감사의 수행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직원

제26조 (직원)

① 공제회의 사업을 담당하고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공제회는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직원은 계약직근로자와 연세대학교 학생 중에서 선발한 근로장학생을 말한다.
② 직원은 공제회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지휘·감독을 받고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③ 직원은 이사장 및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지시가 법률 또는 정관에 위배되거나 공제회의 목적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직원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위임을 받은 상임이사의 결재 없이 공제회의 재원을 사용할 수 없다.

제 27조 (운영위원)

① 공제회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이를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은 무인접수함 운영에 대한 업무를 행하며, 재학중인 대학(원)생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의 장학금은 학기 초, 학기 말에 나누어 지급한다.

제28조 (보수 및 여비)

이사, 감사, 연구위원의 활동비와 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8조를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이사진의 협의로 정할 수 있다.
① 공제회 직원 급여 인상률은 공무원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전년 기본급 기준 5%로 적용한다.
② 신촌 교직원의 급여의 상한액은 해당연도 기준 8급 공무원의 15호봉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원주 교직원의 급여의 상한액은 해당연도 기준 9급 공무원의 15호봉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명절 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및 복리후생 관련 보수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인정하되,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⑤ 학교가 정한 방학 중 단축근무 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보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제29조 (징계)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직원이 제25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직원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결근하거나 직장을 이탈한 경우
3. 직원이 형법 제355조^ 내지 제357조^ 또는 제359조^를 위반한 경우
4. 기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제회의 목적에 반하여 공제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친 경우

② 징계는 해임, 정직, 감봉, 경고의 4종으로 한다.

^ 형법 제355조 (횡령·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5.29]
[본조제목개정 2016.5.29]
^ 형법 제359조 (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조 (해임)

① 직원이 전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② 직원이 전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해임하여야 하며, 직원이 전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잔여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이사회는 해고하기 최소 30일 전에 직원에게 통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지급이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는 불가하며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④ 해임 혹은 퇴사 시, 후임자의 인수인계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제31조 (정직)

① 직원이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정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정직의 기간 동안은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2조 (감봉)

① 직원이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감봉을 할 수 있다.

② 감봉은 월보수액의 10분의1 이상 3분의2 이하의 범위 내에서 행한다.

제33조 (경고)

① 직원이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경고를 할 수 있다.

② 경고를 이사회 명의로 구두 또는 문서로써 행한다.

제34조 (채용)
① 공개채용을 통해 신촌과 원주에 각 1명의 직원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 또한 상황에 따라 근로학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최소한의 업무 적합성을 판단하여, 정부 '의무고용제도'에 맞게 장애인, 시니어, 주부 등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시 선발한다.

제6장 공제급여

제35조 (공제급여 기간 및 범위)
① 공제급여 기간은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추가가입자는 1학기는 추가가입 후 다음날(익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추가가입 후 다음날(익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공제급여 범위는 공제급여기준에 의한다.

제36조 (공제급여기준)
공제급여는 국민건강보험 급여기준에 준한다.

제37조 (공제급여의 종류 및 일부 제한)
① 공제급여는 요양급여, 장제급여로 한다.
② 공제급여는 상한선을 둔다. 상한선은 외래와 입원 통합으로 학기당 100만원으로 한다.
③ 약제비 관련, 원내 처방을 통한 병원 내 약제비는 공제가 가능하나 약국의 비용은 제한한다(이는 종합병원 및 병원의 진료비 내역서를 기준으로 증빙한다.).

제38조 (공제의료기관)
국내의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39조 (공제급여요율)
공제급여요율은 공제급여기준에 의한다.

제7장 재정

제40조 (재정)
본 공제회의 재정은 공제회비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1조 (공제회비)
공제회비는 학기당 25,000원으로 하되, 이사회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42조 (공제회비 불환급)
공제회원이 납부한 공제회비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료급여 1종, 차상위계층 1종은 본인이 요구할 경우 반환한다. 반환된 경우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 보고한다.

第43조 (적립금)

공제회의 모든 수익과 재산은 제3조와 제4조에 의거한 고유목적과 고유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고유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모든 이익은 공제회에 적립한다.

第44조 (회계연도)

본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第45조 (예산 및 결산)

① 현 이사회의 승인하에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본회와 직결된 회의 및 출장, 사무용품 구매 및 대외협력 등에 필요한 기타 경비만 사용한다(홍보 및 운영 전반에 필요한 비용 발생의 경우 이사회 승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② 공제회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세입과 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외부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사장은 2학기 개강 전에 전년도 회계결산보고서를 적당한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 고문, 연구 및 자문위원은 학생직영에 대한 운영에 일체 관여할 수 없으며, 제 26조(고문, 연구 및 운영위원)에 의거한 사항을 제외하고 일체 지원은 불가하다.

第8장 해산

第46조 (해산)

공제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第47조 (잔여재산 처분)

본 공제회가 해산하였을 때 청산 잔여 재산은 공제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정관 제3조에 근거하여 유사한 목적을 위해서 처분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부분개정)은 공표된 개정일부터 시행한다.